

# 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  
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배재학당(배재대학교)의 201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배재학당(배재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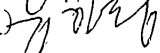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
구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3. 학교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4. 부속병원 관련				해 당 없 음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배재학당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  
2. 배재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  
3.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16년 5월 일

학교법인 배 재 학 당

감사 유 하 정 (인) 

감사 한 백 현 (인)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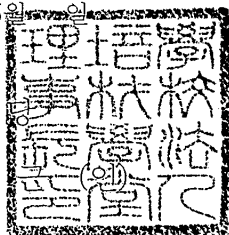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2003호)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2016년 5월 일

학교법인 배 재 학  
이 사 장 꺾 명



피감사 기관장

2016년 5월 일

배 재 대 학 교  
총 장 김 영 호

